

I .반론보도청구사례

**피신청인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로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러가지 방송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들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7. 26.자 판결 (2001카합141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26일 강남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소속 공무원 김 외 17인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강남구청을 언급하여 비리사실을 말하거나, 신청인 공무원들을 지명한 바 없고, 더군다나 신청인 공무원들에 대한 영상과 음성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를 통하여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제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내부를

비추고,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부 신청인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상납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유홍업소들의 소재지가 강남구청 관할 내인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관할구청이 불법영업을 묵인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앞부분에서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방송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유홍업소 주인들로부터 상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들이 신청인 공무원들이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 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과 이 사건 방송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자체를 인용반론해 준 바 있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내용은 공무원들에 대한 유홍업소 주인들의 상납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취재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청인 공무원들측의 주장 전에 장시간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상납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일부 방송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 공무원들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SBS가 2001년 5월 11일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하로 서울 강남의 유홍업소 등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이 같은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데에는 유홍업소들이 경찰관과 구청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신청인들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2001년 6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160)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합1414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김

2. 서

3. 박
4. 고
5. 주
6. 최
7. 정
8. 임
9. 윤
10. 진
11. 박
12. 오
13. 임
14. 민
15. 박
16. 함
17. 이

신청인 1 내지 17 주소 서울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윤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대표이사 윤 세 영, 송 도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 동 원, 조 승 우

변론종결 : 2001. 7. 12.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게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신청 및 나머지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상단화면에는 두 줄로 '강남구청 위생과 공무원들, 상납비리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매주 30,000,000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신청인 강남구라고만 한다)는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이고, 나머지 신청인들(이하, 신청인 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은 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현재 신청인 김 ○ ○ 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1계장, 신청인 주 ○ ○ 은 식품위생1계 소속 공무원들이고, 신청인 서 ○ ○ 은 식품위생2계장, 신청인 최 ○ ○ 은 식품위생2계 소속 공무원들이고, 신청인 박 ○ ○ 은 공중위생계장, 신청인 정 ○ ○ 은 공중위생계 소속 직원들이고, 신청인 고 ○ ○ 은 청소년대책반장이고,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피신청인은 2001. 5. 11.에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데에는 유흥업소들이 경찰관과 구청직원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상납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묵인, 비호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위 방송에서 신청인 공무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방송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이라고 한다)과 같다.

2. 신청인 공무원들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인용되는 부분

(1)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공무원들은 위 「뉴스추적」에서 공표된 이 사건 방송내용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방송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 방송내용에 대하여 별지 반론보도문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방송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강남구청을 언급하여 비리사실을 말하거나, 신청인 공무원들을 지명한 바 없고, 더군다나 신청인 공무원들에 대한 영상과 음성은 음성변조와 모자이크처리를 통하여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방송법 제91조 제1항 소정의 반론보도청구권자로서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나, 반론보도청구권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내부를 비추고,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이라는 자막을 표시한 상태에서 일부 신청인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내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상납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유흥업소들의 소재지가 강남구청 관할 내인 청담동, 압구정동

등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관찰구청이 불법영업을 묵인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앞부분에서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방송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유흥업소 주인들로부터의 상납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들이 신청인 공무원들이 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과 이 사건 방송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자체를 인용 반론해 준 바 있으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방송에서 피신청인측 기자가 방송 도중 “강남구청 위생과에서는 업주의 상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금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신청인 공무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방송내용은 공무원들에 대한 유흥업소 주인들의 상납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취재결과가 방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위와 같은 신청인 공무원들측의 주장 전에 장시간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여 위 신청인 공무원들측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리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방송 중 신청인 공무원들이 상납사실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일부 방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 공무원들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히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은 또한, 신청인 공무원들이 청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9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별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각되는 부분

신청인 공무원들은 위 인용부분 이외에 별지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이 (1) 강남구청은 1995년부터 위생공무원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담당제’를 폐지하고,

1999년부터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2001. 4.부터는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이행 여부 확인 및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일일점검을 민간전문업체에 맡기는 ‘위생업무 아웃소싱’ 제도를 실시하는 등 투명·공정하고, 신속·철저한 위해업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민간업체의 불법업소 단속은 실효성이 없어 뇌물 수수의혹을 벗어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채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 (2) 피신청인은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으나, 위 직원들에게 주어졌던 혐의인 행정처분게시문의 업주교부행위 및 형사고발 미조치 등의 사유는 당초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행정처분시에 반드시 형사고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반론보도문에 포함되어야 하며, (3) 그밖에, 강남구 소재 사후관리 위생업소 7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1개 업소가 취재 당일에 영업을 시작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는 동업소가 계속 영업 중이었으며, 대다수 영업정지업소가 불법영업 중이라는 허위의 방송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이 단속공무원이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함정취재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도 반론보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 강남구청의 유흥업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역담당제, 주민자율감시단 부분 등 대부분은 이 사건 방송의 사실적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위생업무 아웃소싱’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방송에서 강남구청에서 실시 중인 위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정책평가만으로 신청인 공무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공무원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전원을 입건했지만, 처벌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취지로 방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무원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무혐의처분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불과한 위 부분 역시 반론보도문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 공무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3) 불법영업실태 부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함정취재 실패 부분에 관하여도, 이 부분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방송에서의 사실적 주장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

청인 공무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청인 강남구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 강남구는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강남구에 속한 압구정동, 청담동 등지의 유흥업소들에서 불법영업이 만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강남구 지역 전체가 음주와 율락 등 환락지역이며, 이는 뇌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심어주었고, 이에 의하여 신청인 강남구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 강남구에 속한 압구정동, 청담동 등지의 유흥업소들에서 불법영업이 만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보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신청인 강남구 자체의 명예 등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 공무원들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 공무원들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강남구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6.

재판장 판사 손 윤 하

판사 최 병 립

판사 정 석 중

〈반론보도문〉

(1) 방송방법 : 중앙상단 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원 프로그램 「뉴스추적」의 통상표제(「뉴스추적」)와 같은 크기로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원 프로그램의 자막과 같은 크기, 줄 간격, 글자간격의 자막으로 천천히 표시하고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보다 빠르지 않은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론보도문 내용 : SBS-TV는 2001. 5. 11. 「뉴스추적」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상납비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인 김 외 16인은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론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위 김 외 16인은,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상납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고, 불법영업 업주를 비호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에도 불법영업 업주를 옹호하는 말을 한 적은 없고, 다만 유흥업소의 위법현장을 직접 적발하기가 어려워 공무원의 위법업소 단속시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 외 16인의 반론내용을 방송해 드린 것입니다.

〈반론보도요구문〉

SBS-TV는 2001년 5월 11일 저녁 「뉴스추적」에서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는 제목으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소속 현직 공무원들이 상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및 강남구청 보건위생과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유흥업소가 식품위생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범위반 현상은 단지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데도 SBS는 「뉴스추적」의 예고 방송에서는 ‘환락1번지 강남 - 그 뇌물커넥션’이라고, 본 방송의 타이틀에서는 ‘불법영업의 비밀 - 상납’이라고 방송함으로써 마치 강남구 지역 전체가 음주와 율락 등 환락지역이며, 또한 강남구만이 환락지역이라거나 또는 최소한 강남구가 가장 환락지역이며,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뇌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 주어 강남구민과 보건위생과 직원들의 명예와 강남구의 보건위생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은 1995년부터 위생공무원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구역담당제’를 과감하게 폐지하였으며, 1999년 1월부터는 18,000여개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단지 10여명의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관리·단속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어 주민 140명으로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강남구는 2001년 4월부터 생계위협 및 과도한 처분 등을 사유로 불법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행정처분업소의 처분이행 여부 확인 및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일일점검을 민간전문업체에 맡기는 '위생업무 아웃소싱' 제도를 실시하여, 아웃소싱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규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이와 함께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구 시건장치 확인, 통로적치물 제거 등과 청소년 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계도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1399번 신고전화를 가동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공무원과 용역업체가 동시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3-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신속하고 철저한 위해업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BS는 강남구청이 연간 1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흥업소 단속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겼으나, 민간업체의 불법업소 단속은 실효성이 없어서 뇌물수수 의혹에서 벗어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채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SBS는 2000년 7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당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게시문의 업주교부행위 및 형사고발 미조치 등의 사유로 입건된 것뿐이며, 그러한 사유는 당초부터 형사처벌의 대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2000년 1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 9. 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시 형사고발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식품위생감시지침에 상습고질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한 것이 상습고질업소가 아닌 업소에 대해 형사고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1999. 6. 16.자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관계법령, 감시지침, 위반업소 관련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처분관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를 보내오므로 강남구 보건위생과에서도 재량으로 행정처분시 형사고발의 병행 여부를 결정하여 왔는데, 그 후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2000. 6. 10.자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병행되도록 조치하라는 업무지시를 함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그 이후에는 고발조치를 반드시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업주들로부터 상납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법영업 업주를 비호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반면 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로 인해 마치 강남구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금품을 요구한 양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SBS 취재진과 함께 강남구 소재 사후관리 위생업소 7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는데 행정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업소는 1군데뿐이었고, 동 업소 또한 취재 당일해야 영업을 시작(소위 재오픈)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동 업소가 10여 일전부터 계속 영업 중이었으며, 대다수의 영업정지업소가 불법영업 중이었다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당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영업장폐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 밤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단속직원들은 당초 단속대상 업소가 아닌 음식점 2곳에 대한 SBS 취재진의 단속요청을 받고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노래방 기기 또는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고 단지 룸에서 손님 옆에서 서빙하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을 뿐이어서 보건위생과 김 계장이 이러한 상황으로는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유흥형태 영업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무원의 위법업소 단속시의 어려운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도 SBS는 이 부분을 전후 설명없이 특정부분만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김 계장이 마치 업자와 유착하여 그를 비호하는 장면으로 오인되도록 편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노래하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석작배' 사실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SBS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지 손님방에 노래방기가 있는 정도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SBS는 마치 김 계장이 업주를 두둔 내지 비호하고 있다고 잘못 보도하였습니다.

SBS는 청담동 소재 휴게음식점에 대해 몰래카메라를 휴대한 취재진을 미리 업소에 침투시켜 놓고 업자와 단속공무원을 상대로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는 지 등의 유착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함정취재를 하였으나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에 대해 아무런 혐의 점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매월 50만원씩의 상납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상납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미리 단속정보를 받는 등 단속정보가 새는 일도 없으며 강남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불법영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업소주인들의 입장만을 두둔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 사건 방송내용〉

(프로그램 앞머리에서 방송내용 중 주요부분을 요약하면서) 성명불상자 : 구청은 오십, 경찰서는 오십, 파출소는 삼십, 이런식으로 계속 주죠.

성명불상자 : 돈을 얼마나 번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세상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단란주점 사장 :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하고 의례적으로 와서 한달에 한 번씩 받으러 오죠.

기자 : 돈을 주면 뭐가 달라져요?

단란주점 사장 : 아무래도 단속을 피해서 가죠. 오늘은 위험하니까 장사를 하지 말라든지, 불을 끄고 하라든지.

현직 공무원(성명불상자) : 직원을 해 가지고 가서 하면, 뭐랄까 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봐주자 이렇게 하면은 봐주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보통 4~50만원씩 줘요.

기자 :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직 공무원(성명불상자) : 그게 아무리 해도 한 2-30군데 정도.

[사이에,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됨]

단란주점 주인(여성) : 단속이나 하고, 단속도 아닌 단속하고 돈 먹으로 오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저희 시민들이 아주 피가 빠져요. 피가. 생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 가게를 차렸나 한숨질 때가 아주 한 두번이 아니예요.

유 기자 : 방금 보신 화면은 유흥업소 업주와, 현직 구청공무원 그리고 경찰의 얘기입니다. 올해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청의 위생과 직원 16명 전원이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 기자 : 당시 경찰은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

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전원을 입건했지만, 처벌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9곳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 업소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사이에, 압구정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여성접대부를 고용하고, 윤락알선 등의 불법영업을 하는 장면이 방송됨]

정 기자 : 그렇다면 다른 업소들은 어떨까? 취재진은 지난 1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던 서울 청담동의 한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여전히 폐쇄된 업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불은 꺼져 있는데도, 업소에선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자정을 넘어서자 이 업소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0여 분쯤 뒤, 고급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여성들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남자손님과 팔짱을 낀 채 잇따라 업소에서 나오고 있는 여성들. 불을 꺼놓은 채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날 취재진은 직접 업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처럼 입구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예상대로 영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 단속 나와서 걸리면?

종업원 : 미리 전화가 와요. 단속 나오면.

취재진 : 종업원은 단속기관에서 정보를 준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사이에, 위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종업원의 진술이 방송됨]

(‘보건위생과’ 간판을 비추며)

기자 :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문제가 됐던 9개 업소 가운데 5개 업소가 여전히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영업 단속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인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 접객부 고용은 아까 말한 대로 단란주점 천개 중에 한 8-90%가 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기자 : 알고 있으면서 현실이 이러니깐 어쩔 수 없다란 애기예요?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 : 그러면 그 천개를 다 단속해서 영업정지 3개월 때리라고요? 그렇게 보도해 줘요. 때리게. SBS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보도를.

기자 : 당연히 이런 업소를 단속해야 할 식품위생과 직원이 업소 주인들의 입장만을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이에, 취재진이 경찰관, 구청직원과 함께 불법영업 유흥업소 단속에 참여하였는데, 유

홍업소들의 불법영업장면, 단속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업주가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방송됨]

유 기자 : 취재진은 단속 공무원과 불법업소 단속을 동행취재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속정보가 새는 일이 많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이천여 개의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불법영업 실태는 과연 어떤지 직접 현장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이에, 호텔 일식집에서의 접대부 고용, 윤락알선 등의 불법영업 실태가 방송되고, 주택가에 소재한 한식집에서의 위와 같은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현장, 업주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변명 등이 방송됨]

기자 :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취재진과 함께 불법현장을 목격한 구청공무원까지 별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관할 구청단속직원 : 문제가 크게 안될 것 같습니다. 유흥형태라는 것은.

기자 : 방에 노래방기기가 있잖아요.

관할 구청단속직원 :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기계가 있는 거 가지고 현장이 없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자 : 여성접대부는?

관할 구청단속직원 :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접대부라는 게 어떤 동석작배를 해야 된다고요. 같이 술먹고 노래부르고.

기자 : 결국 현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공무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업소에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 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른바 유흥1번지로 알려진 강남에서 업소를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그 이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〇〇단란주점 사장 : 강남구청은 미리 전화가 나와요. 만약 돈을 준다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나간다. 그쪽 동네를. 그럼 이제 간판 끄고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돈을 안 주면 막 이런데는 리스트에 적혀 있어요.

기자 :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〇〇단란주점 사장 : 단속을 안 나오는 데는 접대를 갖다가 확실하게 했겠지. 로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기자 : 로비라는 게 어떻게 하는건데?

○○단란주점 사장 : 돈을 주는 거지. 상납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어?

기자 : 그러면 단속이 제대로 안되겠네.

○○단란주점 사장 : 왔다갔다 하탕치는 거지.

기자 : 업주로부터 상납을 받은 공무원이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불법영업을 눈감아 준다는 애깁니다.

기자 : 그렇다면 상납액은 얼마고 또 어떻게 전달될까?

□□단란주점 사장 : 구청은 오십, 파출소는 삼십, 이런 식으로 계속 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한 지 1년 됐는데, 10개월 동안 1천300만원 정도 나간거지.

기자 : 게다가 공무원들은 추적을 두려워하면서 상납한 내용을 절대 기록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단란주점 사장 : 이제 수표는 싫고, 현금만 달라. 왜냐하면 수표 같은 것 쓰면 추적 당하고.

기자 : 수표를 준 적은 있어요?

□□단란주점 사장 : 수표는 준 적이 없어요. 처음에 주니까 빠구 맞았어요.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 같은 거 나오면 걸리니깐. 일부러 빼가지고 적지 말라는 거죠.

기자 : 단속공무원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흥주점 사장 : 그걸 못하면 술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청이나 경찰서라는 걸 잘 모르고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허구헌날 당하지요.

경찰관 : 영업을 하면서 돈 주는 사람이 만약에 경찰관 주면은 구청 공무원 모르게 준다고요.

기자 : 결국 업소주인과 공무원의 상납고리가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단속을 느슨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애깁니다.

전 유흥업소 여사장 : 노른자 모구청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관할에 위생과 직원들은 한달 수입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기자 : 상납받는 거로만?

전 유흥업소 여사장 : 예.

기자 : 일년 하면은요?

전 유흥업소 여사장 : 집을 한 채 사는 것이죠.

기자 : 실제로 강남에서 업소를 운영하다 그만뒀다는 30대 여성은 이제 술집 운영은 지긋지긋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 유흥업소 여사장 :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해 먹을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내가 손님들한테 저거를 하고 팔아서, 그걸 갖고 저걸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 떼어가구, 저 사람 떼어가구, 차라리 다른 직종이 낫지. 그렇게 부당하게 뜯기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기자 : 그러나 관할구청 위생과에서는 오히려 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유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관할구청 담당직원 : 저녁을 먹자, 언제 나와라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순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위생공무원이 한 두명 한 것도 아니고 많이 구속도 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상당히 주의를 하고 많이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자 : 취제가 끝나갈 무렵 자신을 강남구청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으로부터 상납에 대한 흥미로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〇〇구청 직원 : 저는 〇〇구청 직원인데요. 자기네들끼리 직접 저기니까 외부에 노출되기가 어렵죠.

기자 :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〇〇구청 직원 : 그렇죠. 수표는 단 10만원이라도 추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자 : 그렇죠.

〇〇구청 직원 : 그런 점 때문에 현찰로.

기자 : 단가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〇〇구청 직원 : 아무래도 최소 50만원은 다 저기해요?

기자 : 50만원씩 20군데면 천만원이네요?

〇〇구청 직원 : 그렇죠.

기자 : 그럼 한달에 천만원을 받는단 얘긴가요?

〇〇구청 직원 : 그렇게 봐야죠. 왜 그런고는 자기들은 그걸 내고도 훨씬 더 이익이니까.

임 기자 : 강남구청 위생과에서는 업주의 상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금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단속업무를 민간 용업업체에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 강남구청이 업소단속을 민간업체에 맡긴 지 한달, 연간 1억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일까?

[사이에, 민간업체에 대하여 단속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단속업체 직원들이 별다른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됨]

(강남구 보건소라는 자막 하에)

기자 : 그러나 강남구청측은 불법영업에 대한 문제는 단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이 잘못됐다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강남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 못 지키는 법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고쳐달라고 이미 올렸어요. 그건 못 지키다. 한명도 지키는 놈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르느냐. 안단 말입니다. 거기서 니네들 강남 가니까 다 하더라.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들 다 파면시키든지,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위생과 직원들 다 파면시켜야돼.

(방송 이틀전 강남구청이라는 자막 하에)

기자 : 그리고 취재가 끝나갈 무렵 취재내용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구청에 찾아가 취재진에게 한 담당직원은 폭언까지 퍼부었습니다.

구청 직원 : 소장실에 와 가지고, 하지마

기자 : 당신 XXX 봐. 이거.

구청 직원 : 뭐? 당신이 뭐야? 나이 몇 살 먹었어 당신?

(방송 당일 강남구청이라는 자막 하에)

기자 : 취재진은 방송 나가기 직전 강남구청에 최종 입장을 듣기 위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하자마자 완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 카메라 건들지 마세요!

구청직원 : 들이대지 말라니까.

기자 : 그 과정에서 고가의 방송장비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강남구청이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 기자 : 취재진이 문제로 삼은 것은 여전히 업주와 유착되어 있는 일선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본 방송이 나오기 전에 내용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진의 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실려 있는 이 소식지 15만부를 발행하겠다고 방송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까지 냈습니다. 상납은 어찌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관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 뉴스추적은 일부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말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의 언론장악의도에 따라 언론사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청구는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 9. 28.자 판결 (2001카기1082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01년 9월 28일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피해자에 관하여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고, 동조 제7항은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특별히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또한 별개의 사회적 개체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신청인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칠 뿐, 바로 정부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부여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01년 7월 4일자 제4면에 『1974년 ‘동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라는 제하로 정부가 1974년 기업체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을 탄압하였던 사례와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정부가 언론탄압 내지 언론장악의 의도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제5면에 『방송을 정권 지지의 핵으로』라는 제하로 현 정부 출범직전 작성된 ‘새정부 언론정책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언론대책문건이 보도되었다고 하면서 그 문건과 뒤에 만들어진 일련의 언론문건에 적시된 대로 정부가 방송을 활용하여 특정신문을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7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245,246)을 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기10823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국정홍보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표자 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 태 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론종결 : 2001. 9. 14.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가. 동아일보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
상기사인 『1974년 ‘동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
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나. 동아일보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
상기사인 『방송을 정권지지의 핵으로』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이 위 1항 기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
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2001. 7. 4.자 동아일보 제4면에 『1974년 ‘동
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를 큰 제목으로 하고, 그 아래에 『‘경제적 수
단 압력’ 공통점 : 74년 ‘자유선언’후 광고 못내게, 올초 비판보도 늘자 ‘세금철폐’』, 『다
른점 : 70년대 무차별 ... 현정권 ‘정교’』, 『전문가가 보는 세무조사 : 권력핵심 지시 가
능성 높아 ‘여론만들기’ 쉽지는 않을 듯』을 작은 제목으로 하여 정부가 1974년 기업체에
게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을 탄
압하였던 사례와 2001년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정부가 언론탄압
내지 언론장악의 의도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
한 사실, 또한 같은 날짜 동아일보 제5면에 『방송을 정권 지지의 핵으로』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 출범직전 작성된 ‘새정부 언론정책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언론대책문건이 보도
되었다고 하면서 그 문건과 뒤에 만들어진 일련의 언론문건에 적시된 대로 정부가 방송
을 활용하여 특정신문을 억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

있음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반론보도심판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를 받았으므로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신청인이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우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다른 피해자에 관하여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고, 동조 제7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특별히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또한 별개의 사회적 개체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신청인이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 스스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에서 신청인이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그칠 뿐, 바로 정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부여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외에 신청인이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스스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과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9. 28.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별지 1 목록〉 반론보도문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 7. 3.자 제4면의 『1974년 ‘동아광고사태’ - 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위 기사는 언론탄압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동아일보의 ‘74년 광고사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비교하면서, 이번의 세무조사가 언론탄압 행위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74년 광고사태는 군사정권이 정보기관을 통해 각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언론 기업에 광고계재를 막은 불법적인 언론탄압 행위인 반면, 이번 세무조사는 법적 근거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또 광고탄압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사의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인 반면, 현재의 세무조사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위 기사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동아, 조선 중앙일보가 옷로비사건, 의약분업,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여 시작되었

다고 보도되어 있으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법적용의 사각지대이었던 언론사에도 예외없이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기사는 이번 세무조사가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진행돼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하여, 마치 정부가 사전 음모 하에 은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정부는 법적 근거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히려 위 기사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이번 세무조사를 1974년의 광고탄압과 동일하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는 비판적 신문사에 밀동을 뒤흔들만한 천문학적인 추정세액이 통보됐다고 보도하여 정부가 언론사의 논조에 따라 정략적으로 추정액을 부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세무조사는 23개 언론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동아일보사에 대한 추정세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피청구인의 탈루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 동아일보의 논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국정홍보처장

〈별지 2 목록〉 반론보도문

국정홍보처는 2001. 7. 3.자 동아일보 제5면 『방송을 정권 지지의 핵으로』라는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위 사설에는 방송을 정권지지의 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언론대책문건을 근거로 현 정부가 방송을 통해 신문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설에서 언급된 문건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정부는 방송을 이용하여 언론을 탄압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 정부는 과거 언론정책을 주관하던 공보처를 폐지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전하였으며, 방송행정업무는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관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언론의 자유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 사설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내부거래조사, 신문고시의 부활 등이 바르소리를 하는 특정신문을 옥죄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신문을 옥죄려는 정부의 의도라는 위 주장은 출처불명의 괴문서가 정부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만큼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정부는 조세정의 실현 및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및 불공정 내부거래 조사 등을 하였으므로, 특정신문을 옥죄려는 정부의 의도 하에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동아일보의 사실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반론보도청구인 국정홍보처장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보도 내용만으로는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10. 11.자 판결 (2001카합518)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11일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사는 학교재단이 설립자의 친인척들에 의하여 족벌경영되고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 이사장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호통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증원·국고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사장의 남편이 교수실을 사용하고 회의를 지켜보는 등 학교의 업무에 개입한다는 사실, 설립자의 장례비에 학교 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만성화돼 있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유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상속세가 없어 대물림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재단의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로서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만으로는 위 개인들과는 별개의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신청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반론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겨레21> 2001년 5월 15일자 제22면에 『돈을 벌려면 학교를 세워라』라

는 제하로 신청인 학교재단이 설립자의 친인척들에 의하여 족벌경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기사를 게재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171)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합518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천시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최 학 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 형 근

변론종결 : 2001. 9. 13.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 21> 제22면 상단부분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20급 활자로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주 2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1993.경 설립되어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주간 <한겨레21>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발행의 <한겨레21> 제359호(2001. 5. 1.자) 제22면에서 큰 제목 『돈을 벌려면

학교를 세워라』, 작은 제목 『어느 사학관계자의 생생한 고백 ... 족벌들이 자자손손 말아먹는 이 엄청난 현실』, 중간 제목 『국회의원 이사장, 오히려 호통치다』, 『감사도 없고 상속세도 없는 천국』으로 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지난 3월 초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로 국회가 한창 씨끄러울 때 이아무개 씨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저는 30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일하다 퇴진 뒤 수도권에 소재한 한 사학재단의 사무국장 겸 전문대학 사무처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는 조목조목 재단의 비리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는 96년 9월부터 97년 3월까지 6개월간 이 학교에서 일하다, 더 이상 공범자가 되기 싫어 사표를 썼다고 한다.

앞서 말한 족벌경영과 함께 이 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150개교 평가결과 최하위인 D급을 받았지만 학생을 200명 증원하고 수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사무처장이던 이씨는 이사장이 교육부 실무과장에게 전화 걸어 호통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사장은 당시 15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씨는 “왜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려고 안달을 하는지 곧바로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사장의 남편은 교수실 하나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출근해 학장주재의 과처장 회의를 지켜보았다. 사무처는 교수들의 교통비 몇천원을 트집잡으면서도 이사장 남편인 설립자의 장례비 수천만원을 학교 돈으로 쓰기도 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횡령들은 만성화돼 있었다.

가장 큰 부정은 기본재산 유용이다. 설립 당시 재단은 교육부에 약정한 기본재산 100억 원 중 30여 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으나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교육부에 보고한 뒤에는 재단장부에 입금기장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직원 월급을 지불할 수 없어 사무처장 개인명의로 5천만원, 직원 두 사람 명의로 1억원을 빌리기도 했고, 학교건물 공사대금이 없어 재단 계열회사 자금을 차입한 뒤 기부금으로 바꿔치기도 했다.

부채계정과 자산계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씨는 “기업생활 30년 동안에는 상상도 못할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손쉽게 저질러졌다”며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 기업할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최소한 부정에 가담하고 공모할 필요인원이 있지만 사학은 두 세명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최고상속세율이 45%인데 비해 사학은 완전 면세이므로 자자손손 세금 한푼 안 내고 대물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세무서를 통하거나 사외이사, 노조를 통해 감사·감시를 받지만, 사학은 분규가 없다면 교육부 감사도 받지 않는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사학재단 이해집단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적어도 내가 겪은 일들에 비춰볼 때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라며 “이 일은 결코 일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판단

신청인은 위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연 신청인이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위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 및 전문대학이 신청인 및 청강문화산업대학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위 기사의 재단이 신청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사의 사학재단 전문대학이 신청인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지칭하는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기사는 학교재단이 설립자의 친인척들에 의하여 족벌경영되고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이 이사장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호통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증원·국고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아무런 직책이 없는 이사장의 남편이 교수실을 사용하고 회의를 지켜보는 등 학교의 업무에 개입한다는 사실, 설립자의 장례비에 학교 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만성화돼 있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유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상속세가 없어 대물림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재단의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로서 위 기사에서 지칭하는 사학재단이 신청인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은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 개인들에 대한 기사로 보여질 뿐이고 위 기사내용만으로는 위 개인들과는 별개의 학교법인인 신청인 자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신청인과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설립자, 이사장 등에 대한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반론을 제기할 이익을 인정할 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기사로 신청인이 피해를 받은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신청인의 주장 중 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청강문화산업대학에 학내분류가 있는 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부분은, 신청인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 기사에 그러한 사실적 주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기사에 의한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기각한다.

2001. 10. 11.

재판장 판사 김 남 태

판사 박 형 순

판사 이 승 엽

〈별 지〉 반론보도문

제 목 : 학교법인 청강학원, 비리나 분규 발생사실 없다

본 문 : 〈한겨레 21〉은 2001년 5월 15일자에서 『돈벌려면 학교를 세워라』라는 제하로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설립하였는데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학교법인 청강학원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학내 비리가 문제되어 수년째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일부 사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도덕한 사학재단이 결코 아니며, 그 동안 단 한차례도 학내 분규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청강문화산업대학을 그 어떤 사학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설립자인 고 청강 선생은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의 철학과 의지로, 건강한 사고와 경쟁력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인재를 길러 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의 기간으로 삼고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과 지역사회 개발 및 문화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평생 사업을 하여 번 재화를 출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을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설립자가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 설립자의 족벌들이 자자손손 말아먹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96년 9월부터 97년 3월까지 6개월간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이 은

재직시 학교 직원이나 교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품의 결재도 없이 학교 물품을 마음대로 구매하는가 하면 업무태만과 불손하고 무례한 언동, 설립자의 장례식 때의 욕설과 폭언 등,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1997. 3.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자 학교를 떠난 뒤 청강학원을 비방해 온 자인데,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

1996년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이사장이던 당시 정 의원은 야당 소속일 뿐 아니라 전국구 출신이어서 교육부 관계자에게 호통을 치거나 그 밖에 위세를 과시한 적이 없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전국 전문대학 150개교 평가결과 최하위인 D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생증원과 국고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장이 교육부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의 권세를 부린 적이 없다.

청강학원의 설립자인 회장은 교사신축이 진행되던 1995년에는 건축회의 참석차 교지를 방문하였으나 1996년 개교 후에는 투병 중이어서 학교에 나갈 수도 없었고 사무실을 설치한 적은 더욱 없었으며 이 부임한 96년 9월부터 별세 때까지는 외병 때문에 학교 방문도 불가능해서 설립자가 학사행정에까지 개입하거나 교수들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립자가 1996년 11월 사망했을 때 청강학원과 (주)남양알로에가 공동으로 장례식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이 은 장례추진위원이었으며, 학교측에서는 장례식 당일 학교방문 손님식대와 장례식 준비비용 등으로 약 5백만원을 부담하였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학교건물의 신축공사 예정가를 당초 92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공사비를 절감하여 실제 소요된 공사비가 예정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부족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지, 학교법인 청강학원이나 설립자가 일부러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상철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검찰 수사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그외 학교법인 청강학원 등에게 횡령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1997. 4. 21.까지 설립자 등으로부터 약정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로 약 30여 억원이 초과 출연되었다.

한편 학교법인 청강학원이 기본재산을 적게 출연하여 이 때문에 교직원 월급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없었으며, 교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이 이 개인명의로 5천만원, 직원 두 사람 명의로 1억원을 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또한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학교건물 공사대금이 없어 재단 계열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뒤 기부금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도 없다.

96. 9. 5. (주)남양알로에가 5억원, 97. 1. 25. 한국유니베라가 2억원 97. 1. 31. 한국유니베

라가 2억4천6백만원(건축 기성금 결제). 97. 2. 10. 정 당시 이사장이 금 2억1천2백5십만원. 97. 2. 14. 한국유니베라가 금 2억원을 각 기부하므로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이를 학교 건물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학교법인 청강학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표명한 바 없으며 신청한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0. 25.자 판결(2001카합1884)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운하 부장판사)는 2001년 10월 25일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방송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측 앵커가 이 사건 방송 서두에서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혈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는 말로 허위의 의료보험급여청구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한 후, 방송기자가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밝혀내지 못한 보험심사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인 사실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신청인 구성원들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의 사례들에서 직접 언급된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방송법 제 91조 제1항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함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범위를 넘어서서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가 2001년 4월 4일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현장추적 - 눈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라는 제하로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121)을 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합1884 반론보도방송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정 상 학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경 국

변론종결 : 2001. 10. 11.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별

지 반론보도문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의 2,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 전체 의사 7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신청인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송신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KBS 뉴스 9」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방송내용

피신청인은 2001. 4. 4.에 「KBS 뉴스 9」 프로그램 중 ‘현장추적 - 눈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는 바, 그 내용은 별지 방송내용과 같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여, 위 위원회가 2001. 5. 16. 중재결정을 하여, 같은 달 23. 신청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 의하여 마치 대한민국 의사들 전체가 허위로 의료보험급여를 타내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듯이 방송함으로써 위 의사들 전체의 명예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의사들 전체를 회원으로 하는 신청인은 방송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

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호 판결 참조), 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직접 언급된 바는 전혀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사건 방송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측 앵커가 이 사건 방송 서두에서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라는 말로 허위의 의료보험급여청구 사례 두 가지를 언급한 후, 방송기자가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밝혀내지 못한 보험심사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두 구체적 사례에서 직접 언급된 의사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이 이 사건 방송내용에 의하여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들 개개인 또는 피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위 표현은 이 사건 방송의 구체적 사례에서 직접 언급될 의사들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뿐 전체 의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수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집단표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의사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신청인 구성원들 일부로서 이 사건 방송과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방송법 제91조 제1항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주요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전체 의사들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함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범위를 넘어서서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01. 10. 25.

재판장 판사 손 윤 하
판사 최 병 료
판사 정 석 종

〈별 지〉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4월 4일자 '현장추적 - 눈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 제목 하의 보도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방송하면서 72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료비 청구는 전산입력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 전체가 그런 청구를 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히며 전체 의사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이 반론보도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방송내용

〈현장추적〉 눈 뜨고도 못 잡는 엉뚱한 청구

◎앵커 : 70살이 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또 어떤 주부는 열흘 간격으로 아이를 두 번 낳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기네스기록감인 보험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도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 지난해 이 병원에서 32살의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보험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출산일은 2000년 8월 17일, 그로부터 열흘 뒤인 8월 27일에 이 산모가 또다시 아이를 낳았다고 병원은 청구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아무 문제없이 통과돼 각각 보험급여가 지급됐습니다.

◎병원 원무과장 : 잘못 청구됐고, 그 부분이 잘못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맞아요. 인정하는 거죠.

◎기자 : 대구 시내의 다른 병원, 이 병원은 더욱 어이가 없는 청구를 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는 할머니가 이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면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요양급여 명세서에 명기된 환자의 출생연도는 1929년, 올해 74살이 된 할머니가 지난해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청구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 아이를 낳으러 가셨나요?

⊙신모 할머니(72살) : 허허허 ... 누가 그래요?

⊙기자 : 그 병원에요.

⊙신모 할머니 : 미친놈들이지. 진찰하러 한 번 갔어요.

⊙기자 : 병원조차 인정하듯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상한 청구였습니다.

⊙병원장 : 누가 봐도 알지요. 그래 누가 72살에 임신하겠어요.

⊙기자 : 그러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모른 채 보험급여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인 거짓조차 잡아내지 못한 심사기관은 뭘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철수(심사평가원 부장)인터뷰 : 심사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심사위원 하려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기자 : 병원이 항생제를 과하게 썼는지 또는 적절한 비용을 들여 치료를 했는지는 심사해 비용 삭감을 할 수 있지만 70살을 넘긴 노파가 아이를 낳았다는 청구는 잡아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심사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뉴스 김 입니다. □

해당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2.자 판결 (2001카기12496)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

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등이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하고,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시민단체인 신청인들은 그들이 검찰과 이른바 친여매체와의 공조 하에, 배후사령탑의 조종에 의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른바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피신청인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기사들에 보도된 반론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과 길이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요지는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의 조종을 받아 검찰, 친여매체와 공조하여 이른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인 사실이 없으며, 배후사령탑이나 다른 누구의 조종을 받아 돌아가면서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사실도 없으며, 정부지원금의 수령이나 반납은 언론개혁 요구나 이를 위한 사전정지작업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서, 이미 해당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1년 7월 27일자 5면에 『검찰수사 사주 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 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야,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하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의 인용 기사를, 동아일보사 또한 2001년 7월 27일자 A1면과 A4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 『친여 방송매체서 확대 보도』라는 제하로 한나라당 기자회견 내용의 인용 기사를 게재하자 신청인들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2001년 8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286, 287)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기12496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1.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직권대행

2.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울

대표이사

3.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

대표자 이사

4.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서울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변론종결 : 2001. 10. 19.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5면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별지 2 기사의 제목 부분 『검찰수사 社主 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반론보도문의 본문내용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본문활자크기의 고딕체로 1 회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오백만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 분하여 그 1은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위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선일보 5면 상단부분에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2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2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각 신청인에게 매일 금 이천만(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신청인 조선일보라고 한다)는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1. 7. 27.자 5면에 『검찰수사 社主 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 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野,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친여(親與)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방송이 매일 한건씩 확대 보도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를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 ‘국세청의 언론사주 고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 ‘지난 24일 시위를 한 참교육학부모회는 10일 시위를 한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11일 시위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언개련 산하단체이고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참여단체라는 사실이 그 근거’,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올해 행자부로부터만 8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들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지원금을 받

고 있다가 7월 초 이를 반납한 것은 현재의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같다'는 등의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에서 직접 언급된 시민단체인 신청인들은 그들이 검찰과 이른바 친여 매체와의 공조 하에, 배후사령탑의 조종에 의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른바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의 내용과 같이, 신청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별지 3 기재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합이 상당하고, 그 게재방법은 위 기사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합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이와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발령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신청인 동아일보라고 한다)를 상대로 동아일보 2001. 7. 27.자 에이(A) 4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 『親與 방송매체서 확대 보도』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의 위 2001. 7. 26.자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2001. 7. 27.자 A1면에서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검찰과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간의 '3자 공조설'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면서, 위 기사와 관련기사인 A4면의 『親與 방송매체서 확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동아일보는 위 A1면의 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독자적 운영체제를 가진 단체들을 홍위병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종' 운운하는 것은 제1당답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반박했다.'라는 반론을, 위 A4면의 기사에서는 정부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최 민언련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은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지, 인건비나

행정비 등 경상비 지원이 아니다”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80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한 나라당도 관변단체냐”고 반박했다. 연개련 관계자도 “독자적 체계를 갖고 있던 시민단체들이 대의를 위해 함께 뭉치는 것이나, 주도적인 단체가 여러 시위에 참여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따졌다. 민언련과 연개련측은 정부지원 사업비를 중도에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라는 반론을 각각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사들에 보도된 반론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게재를 요구하는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표현과 요지는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의 조종을 받아 검찰, 친여매체와 공조하여 이른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인 사실이 없으며, 배후사령탑이나 다른 누구의 조종을 받아 돌아가면서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사실도 없으며, 정부지원금의 수령이나 반납은 언론개혁 요구나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으로서, 이미 해당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주장의 요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그와 별도로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조선일보에 대한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동아일보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1. 11. 2.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별지 1〉

제 목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野, 언론죽이기 비난』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내 용 : 조선일보는 2001. 7. 27.자 5면에서 『野,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과 친여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의 조종에 의해 한통속

이 되어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같다”라는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언급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언개련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로서, 검찰이나 이른바 친여매체와 공조하거나 배후사령탑이나 다른 누구의 조종을 받아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실이 없다. 또한 언개련과 민언련은 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소요경비를 지원받았을 뿐이므로 정부지원금과 언론개혁 요구나 지지시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별지 2〉

검찰수사 社主죽이기 초점 ... 시민단체 교대로 지지시위

방송은 매일 한건씩 확대보도

“언개련·민언련도 정부지원금 받다 7월 반납”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위원장)와 언론말살국정조사준비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친여(親與) 매체,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몇몇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TV방송 3사의 메인뉴스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이 신문사주의 비리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각각 1일 1건씩 확대 보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조종하는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또 “국세청이 언론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돌아가며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이는 것도 배후사령탑에 의한 조종의혹이 짙다”면서 “반대시위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다른 시위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위원장은 “지난 24일 시위한 참교육학부모회는 23일과 10일 각각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대회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18일 시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10일 시위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이며, 또 11일 시위한 신문개

혁국민행동은 언개련 산하이며 언개련은 23일 시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은 이들 단체가 시위할 때마다 여과없이 보도하며 각계각층이 신문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언론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의에 참여한 21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올해 행자부로부터만 8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언개련, 민언련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7월 초 이를 반납한 것은 현재의 언론 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말살국조준비특위는 별도 성명을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야당의원들의 국정심의를 위한 조사활동을 ‘탈법적’ 행위로 모는 김 민주당 대표의 상식 이하의 망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별지 3〉

제 목 : 시민단체, 자율적 언론개혁 활동 전개

내 용 : 조선일보 2001년 7월 27일자는 제5면에서 『野, 언론죽이기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현 정권의 조종에 따라 언론개혁 지지시위나 성명을 발표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언개련과 (사)민언련,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의 외곽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건전한 시민단체이며, 현 정권의 “외곽단체”나, 현 정권이 나 검찰 그리고 이른바 ‘친여 매체’와 ‘한통속’이 되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적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몇년 전부터 언론개혁을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창해 왔으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년 2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내지 언론사주들에 대한 탈세비리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왔을 뿐 정권에 의해 조종받은 사실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언론개혁에 관하여 현 정부나 이른바 ‘친여 매체’와 공조하여 신문사주의 구속 등 사법처리와 이른바 ‘비판언론’ 죽이기 음모를 가져 본 일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언

론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유도한 적이 없고, 더욱이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 언론을 탄압한 일도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부처로부터 다소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는 구 정권때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어서 시민단체가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단체들을 “외곽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의 지원금과 “언론개혁”은 전혀 별개로서 관련이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이 금년 6월과 7월에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별지 4〉

제 목 : 시민단체, 현 정권의 ‘외곽단체’가 아니다

본 문 : 조선일보 2001년 7월 27일자 제1면에서 『野 “일부 시민단체 홍위병식 동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제4면에서 『언개연-민언련 정부지원금 받아』라는 제목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현 정권의 조종에 따라 언론개혁 지지시위나 성명을 발표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언개연과 (사)민언련,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의 외곽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감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건전한 시민단체이며, 현 정권의 “외곽단체”나 현 정권의 “홍위병”이 결코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현 정권이나 검찰 그리고 이른바 ‘친여 매체’와 “3자 공조”를 맺어 언론개혁 지지시위를 벌인 적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언론개혁을 줄기차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창해 왔으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년 2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내지 언론사주들에 대한 탈세비리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왔을 뿐 정권에 의해 조종받은 사실이 없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유도한 적이 없고, 더욱이 국민의 여론을 빙자해 언론을 탄압한 적도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부처로부터 다소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는 구 정권때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업을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프로젝트)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일 뿐이어서 시민단체가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단체들을 “외곽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의 지원금과 “언론개혁”은 전혀 별개로서 관련이 없다. 언개연과 민언련이 금년 6월과 7월에 지원금을 반납한 것은 당초 예정했던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언론사태’를 주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반론보도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2. 1.자 판결 (2001카기16806)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02년 2월 1일 여 씨가 경향신문사 외 7개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식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문사로서는 그 반론으로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사 외 7개 신문사는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간에 걸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가로서 정·관계 인사나 여권 실세들과 폭넓게 교분을 유지하여 왔고,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비호세력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1년 10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361~376)을 하였으나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1카기1680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장 준 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병 국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종 훈

3.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1가 68

대표이사 김 정 국

4.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석 영

5.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석 현, 송 필 호, 이 제 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권 태 일

6.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장 명 수, 문 현 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 대 화, 한 상 혁

7.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서울 중구 충정로1가 58-1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이 준, 김 대 학

8.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조 갑 제

지배인 조 남 준

변론종결 : 2002. 1. 11.

주 문 : 1.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

내에 발행되는 <경향신문> 제4면에 별지 제1-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경향신문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1)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 제4면에 별지 제1-2 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동아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2)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1-2 나.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신동아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문화일보> 제4면에 별지 제1-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문화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1)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조선일보> 제4면에 별지 제1-4 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조선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2)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조선> 제30면에 별지 제1-4 나.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주간조선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중앙일보> 제4면에 별지 1-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중앙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한국일보> 제4면에 별지 1-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한국일보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제26면에 별지 1-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시사저널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제168면에 별지 1-8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월간조선의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각 기재하라.

2.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제1항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1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제1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1 라.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1 마.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제1 바.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1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제1 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3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

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이를 각 2분하여 각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각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이를 각 5분하여 각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각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1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가.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2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2-2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문화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가.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4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조선> 30면에 별지 제2-4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5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

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한국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6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26면에 별지 제2-7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8.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168면에 별지 제2-8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9. 만약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제1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제3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4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5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제6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7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제8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각 매일 금 3천만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리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식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문사로서는 그 반론으로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2001. 9.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 ‘국제피제이(PJ)과 두목급 출신’,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의 기업가’ 등으로 표시한 사실,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유지’하여 왔다거나 ‘재력을 앞세워 여권 실세들과 상당한 교분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여(呂)씨 비호 고위층 더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비호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을 이 와 고교동문이라고 보도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이 로부터 검찰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여 억원을 받았거나 신청인이 검찰수사 무마용으로 로비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가 신청인이 검찰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까지 손을 쓸 수 있다며 ‘해결사’를 자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아울러 검찰이나 이 의 진술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에 대한 300억원대의 전환사채발행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검찰은 위 돈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 의원이나 조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가) 일간 <동아일보>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폭 출신 사업가’,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 사업가’,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 ‘1992년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한 사실,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거나 오랫동안 정치권과 인간관계를 쌓아오면서 여권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설이 있다거나 검찰·정치권에 ‘마당발’ 인맥을 구축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상고를 졸업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2000. 5월경 이 가 수사를 받게 되자 ‘이회장을 돕겠다’고 직접 나섰다’고 보도하였고, 또한 이 가 약속어음 40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으며,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한편 위 피신청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이 이 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또한 삼에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주간회사의 알선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나 조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신청인은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기사를 반론보도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월간 <신동아>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 2001.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거나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당시 조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구영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문화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광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출신 건설업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수괴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장에는 '88년 국제피제이파를 결성,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인 칠성과 두목 L씨 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야쿠자조직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평소 정치권은 물론 호남 출신 수사기관 고위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워 검찰 고위간부 출신 S, K, L씨의 이름은 항상 신청인과 함께 붙어 다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의 실세인 H의원과 정부산하기관장 J모 전 의원이 각각 면회를 온 것으로 돼있었다고 보도한 사실, '구속 당시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가 검찰 내부 인사뿐 아니라 경찰, 정치권 등지에서도 답지됐다'는 당시 수사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70년대 중반 상고를 졸업하였다고 하면서 이가 신청인의 고등학교 4년 후배라고 보도한 사실, 이가 2000. 5월 긴급체포되었다가 하루만에 석방된 사실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출신인 김모 변호사가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하는 한편 김 전 법무부장관이 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자리에도 신청인이 함께 있었다고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이로부터 사건처리비용, 진정취하비용, 해외전환사채발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이 옹호로부터 42억4천만원의 거액을 뜯어낸 '사기꾼'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라고 보도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제주 KAL호텔 카지노에 거액을 투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이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가) 일간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의 배후’, ‘조폭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1992년 폭력조직을 이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조직 폭력과 유착된 배경에다 지역사업가로서 성장하면서 동향 출신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정치인들은 물론 당시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도한 사실, 비호 또는 연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인사들을 거명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하였고, 조 관광공사 사장이 면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검찰 고위직에 있는 간부 2명이 수사 당시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과 이 가 상고 선후배라고 보도한 사실, 이 가 신청인을 통하여 구명로비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이 이

에 대한 수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는데 이어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이 의 구명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이 의 주가조작혐의를 조사하면서 이 에게 보낸 질문서에 신청인의 혐의 계좌가 명시되어 있었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1998년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검찰 내 일부 인사가 청탁성 압력을 넣어 유야무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옥두 의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간조선> 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1. 9. 27. <주간조선>에서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광주 국제피제이파의 전 두목’으로 알려져 있고 1992년 당시 두목으로 기소되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검찰 간부가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통을 쳤다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이 로부터 사건무마대가로 2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격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 의원이나 조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이 김 의원을 만났으며, 검찰이 이 게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을 받았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주장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국제피제이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1992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이 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한 사실, 이 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화갑 의원이 신청인의 위 구속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이 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300억원대의 해외전환사채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원은 신청인이 이 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권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는 2001. 9.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시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한국일보>에 이른바 ‘이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급 간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폭력조직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광주지역에서는 신청인이 정치인과 검찰간부, 유력인사 등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한 뒤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녔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왔고, 정부산하 기관장인 C 전 의원도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이로부터 진정사건 합의 및 해외전환사채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2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로비사건 뒤에 꼭 배달사고』라는 제목으로 이 용호의 핵심적인 로비창구역할을 했던 신청인도 이 등식의 예외가 아니었고, 로비자금 중 19억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여 씨, 대리인 통해 제주 카지노 폭력인수』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제주 KAL호텔 카지노를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1. 10. 4.자 <시사저널>에서 『검사와 주먹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을 호남 조직폭력 국제피제이파 출신 사업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1986년경 광주로 내려가 호남 조직폭력계를 장악했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조폭 커넥션역할의 한 축을 맡은 대표적인 조직폭력 출신 인물 중 한 사람이 신청인이라고 하면서 신청인과 일부 실세 정치인 및 검찰 간부급 인사들 사이에 오랜 기간동안 커넥션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2001. 8월 초 김 의원은 광주에서 몰래 만났다고 보도한 사실, 광주지검에 근무하였던 검사의 말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광주, 목포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신청인으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던 간부 검사가 대구로 발령나니까 미리 사람을 시켜 대구에 대형아파트를 마련해준 일도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법원경매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보도한 사실, 이가 신청인을 만나 동업자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이의 사기수법과 신청인의 정·관계 로비력이 결합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이용호로부터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은 이가 소유하던 광주 프라도호텔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절정의 로비를 펼쳤다고 하면서 위 호텔을 임차보증금 20억원에 3년간 임차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봐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1년 11월호에서 『한국 조폭의 역사와 계보』라는 제목으로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청인을 '광주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이라고 표현한 사실, 신청인이 동향 출신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정치인은 물론 정권의 실세 급 인사들과 오랫동안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조 관광공사 사장이 면회를 하였고,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이 내려왔으며, 한 검찰 간부는 신청인을 옹호하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의 신청인에 대한 기소내용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이 이로부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 진정한 합의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이 로부터 40여 억원을 뜯어낸 셈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이 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각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의 내용과 게재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신청인이 반박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1 내지 2-8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1 내지 1-8 기재 각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합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들의 위치, 활자 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라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 또한 조 전 의원이 신청인을 면회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 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이 각 소명되므로, 보도를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부분을 반론보도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신청인이 비록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고 하더라도 폭력조직에 관여하여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신청인이 폭력조직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진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 내지 폭력조직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다투나, 위 주장사실이나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반론으로 구하는 내용, 즉 신청인이 과거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 아니었고, 현재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신청인이 이 과 고등학교 선후배인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내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상 기사들이 신청인이 이 의 후견인 내지 해결사로서 정·관계에 로비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과 이 의 관계에 관한 위 반론보도내용이 지엽말단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한편,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2. 2. 1.

재판장 판사 이 공 현

판사 황 진 구

판사 성 창 호

〈별지1-1〉 반론보도문

『경향신문』은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2〉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본인은 이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2〉 반론보도문

〈신동아〉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이 1992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3〉 반론보도문

〈문화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관계로 면회를 온 것일 뿐이다. 또한 위 구속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또한 2000년 5월 이 가 긴급체포되자 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김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하게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간사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4 가〉 반론보도문

〈조선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관계로 면회를 온 것이다. 또한 위 구속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

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여 그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 의 주가조작에 개입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본인은 1998년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 고위간부를 만나거나 그로 하여금 수사진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을 면한 적이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4 나〉 반론보도문

〈주간조선〉은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검찰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5〉 반론보도문

〈중앙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 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한화갑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고, 위 구속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용 호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애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간사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6〉 반론보도문

〈한국일보〉는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 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

내은 관계로 면회를 온 것이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한 일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에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7〉 반론보도문

〈시사저널〉은 2001년 10월 4일자에서 반론보도청구인 여 이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김 의원은 2001년 8월초 제주도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 식사만 했을 뿐이다.

본인이 광주, 목포 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거나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본인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 본인이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다가 대구로 발령 받은 간부 검사에게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본인은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법원경매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 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이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삼에인더스가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이 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본인은 월드컵을 앞두고 프라도호텔의 객실만을 임차하였을 뿐 그 호텔 내부의 룸싸롱, 한식당, 연회장, 이용원, 미용실, 샴(갤러리), 스포츠마사지실 등을 임차하지 않았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1-8〉 반론보도문

〈월간조선〉은 2001년 11월호에서 반론보도청구인 여 기 조폭 출신인데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본인은 국제피제이(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국제피제이파 등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

또한 정·관계, 검찰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고, 1992년 본인이 구속되었을 때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도 없었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거나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고, 더 나아가 이 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반론보도청구인

〈별지2-1〉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경향신문〉은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잘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2가〉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동아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이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이는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2나〉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신동아〉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3〉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문화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보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에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4가〉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조선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들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잘 알고 지

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하나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중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

본인은 98년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검찰 고위간부를 만나거나 그로 하여금 수사진에 압력을 넣어 구속을 면한 적이 없고 당시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것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4나〉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주간조선〉은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와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와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와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와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와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난 8월 초 제주도 여름휴가때 우연하게 처음 봤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서 조출한 식사만 했을 뿐이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용호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용호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5〉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중앙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

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와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와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와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도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 지난 72년 2월 전남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와 선후배 사이가 아니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를 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6〉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한국일보〉는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난 8월 초 제주도 여름휴가때 우연하게 처음 봤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서 조출한 식사만 했을 뿐이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용호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이 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또 이 를 속여 거액을 사기친 일도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7〉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시사저널〉은 2001년 10월 4/11일자에서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외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난 8월 초 제주도 여름휴가때 우연하게 처음 봤는데 가족들 모임이어서 혼자서 조출한 식사만 했을 뿐이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업가로서 변신하며 동향 출신 검찰·경찰·국세청·등 사정기관과 정치인은 물론, 고향은 다르지만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과 오랫동안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 온 적이 없다. 호남 검사치고 여 신세 안진 사람 드물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당시 광주·목포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 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거나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 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여씨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또 본인이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던 간부 검사가 대구로 발령 나니까 미리 사람을 시켜 대구에 대형 아파트를 마련해 준 일도 있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검사에게 아파트를 사 준 사실이 없다.

본인은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이 회사를 발판으로 법원경매 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이 없다.

91년 당시 모 검찰 간부가 주말마다 본인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룰살롱을 드나들었다는 보도나, 당시 호남에서 근무했거나 특정지역 출신검사들 상당수가 본인과 어울려 다녔고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 그리고 당시 검찰 간부가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통을 치는 등 현직 검찰 고위 간부 2명이 질책을 했으며, 또 92년 재판 당시 거물 로비스트를 동원하여 재판장에게까지 로비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보도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 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 회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은 2000년 7월경 이 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가 300억원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우증권으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그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0억4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 및 금융기관에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도 없으며, 또 이 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은 내년에 있을 월드컵을 앞두고서 프라도 호텔의 객실만 임차하였을 뿐 이른바 호황업종인 룬싸롱(4층)이나 한식당(1층), 연회장(2, 3층), 이용실(2층), 미용실(3층), 샵(갤러리, 1층), 스포츠마사지(지하1층) 등은 임차하지도 않았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별지2-8〉 반론보도문(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

〈월간조선〉은 2001년 11월호에서 반론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여 이 조폭두목인데 정치인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안기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해 오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여 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본인 여 은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며 현재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본인은 지난 92년 1월 국제PJ파의 두목이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는 있으나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1992. 5. 18. 본인이 1986.말경 국제PJ파의 두목급 수괴가 되어 폭력범죄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본인은 과거에도 국제PJ파의 두목이 아니었으며 현재에도 국제PJ파 등 어느 폭력조직과도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본인은 지난 92년 사건 때도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또는 타인(조직원)으로 하여금 혹은 타인과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케)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어서 기소된 바도 없었고 그의 폭력전과도 없다.

또한 정계·관계·검찰·경찰·금융계 등에 본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

력도 없다.

본인은 여권의 실세 정치인을 잘 알지 못하며, 그 동안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 의원, 김 의원 등을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92년 본인의 구속당시 현 여권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없으며, 다만 본인을 면회한 조 전 의원은 본인의 장형 및 자형과 젊은 시절부터 가족끼리 알고 지내온 터여서 그런 연유로 본인을 면회를 온 것이지 그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비호세력이거나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 지난 92년 사건 당시 본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현직 검찰간부는 없었으며 본인의 구속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본인을 면회오거나 본인이 출소 뒤 만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를 위해 이른바 ‘해결사’ 노릇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진정사건을 무마해 준 적이 없으며 이용호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더 나아가 관계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본인이 이번 이른바 ‘이 사건’에서 한 일이라고는 작년 5월 이 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본인의 친구가 김 변호사의 집안 동생이어서 그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인 선임을 부탁한 것뿐이며 그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초 검찰의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 대전고검장)의 발표에서도 대부분 확인되었다.

본인은 이 의 진정인을 상대로 진정취하를 부당하게 종용한 일이 없으며, 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이 를 석방케 한 적도 없다.

본인은 이 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중 수십억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계·관계·금융계 등에 전방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정간산업개발 대표이사

□